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8. 18.(목) 09:3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4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6-46-176~17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18조제1항제9호, 제19조제1항,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에 대해서 각각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14년 3월 19일 (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채널에이 종편PP 3사에 대해서 재승인 의결 및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15년 2월에서 6월까지 종편PP 4사에 대한 2014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고, ‘15년 7월 30일 (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채널에이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년 2월에서 6월까지 종편PP 4사에 대해 2015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고, 2016년 7월 20일 (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채널에이에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바 있습니다. 시정명령 내용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입니다. ‘15년 7월 30일 내린 시정명령은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에게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을, (주)제이티비씨에게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과 재방비율 준수를 명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PP 3사 모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조선방송은 콘텐츠 투자계획 580억원에 대해서 실적은 476억원 정도로 이행률은 82%입니다. (주)제이티비씨는 콘텐츠 투자의 경우는 계획이 2,424억원 규모인데 반해 실적은 1,306억원 규모로 이행률이 53.9%였고, 재방비율의 경우는 계획은 47.2%인데 실적은 48%로 나타났습니다. (주)채널에이는 콘텐츠 투자계획이 820억원 규모인데 비해 실적은 600억원 규모로 이행률은 73.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재승인조건에 ‘성실히 준수하고’라고 되어 있을 뿐 어느 정도 준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 없음에도, 재승인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재승인조건을 위반하였더라도 위반의 정도 및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 반하며, 지상파 등 타 방송사

업자에게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재여부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시 피심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라는 점,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시정명령은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라는 법적 의무 자체를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방법입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방송법에 따르면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승인유효기간 3개월 단축이 가능하며,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인 유효기간 단축은 재승인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미가 없고 업무정지 처분은 시청자 불편이 우려되므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재수준입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징금 기준금액은 3,000만원이며, 사업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서 50%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과 콘텐츠 투자금액, 재방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편PP 3사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50% 가중한 4,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입니다. 종편PP 재승인조건에 따른 2015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PP 4사가 재승인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은 외형상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경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출연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에도 불구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조치 건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가 (주)조선방송은 2014년 95건에서 2015년 127건으로, (주)채널에이는 54건에서 67건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타 종편PP에 비해서도 현저히 많으므로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철저한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8월 중에 종편3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4페이지 피심인 의견을 보면 첫 번째, 재승인 조건에 '성실히 준수하고'라고 되어 있을 뿐 어느 정도 준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준이 제시된 바 없다, 이것이 이번에 낸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번에 제출한 의견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성실한 준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기존 2014년에 부과한 과징금에 관련된 취소 소송에서 다툼 바도 있습니다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를 ‘성실히 준수하라’는 100%를 완벽하게 준수하라는 의미라고 판단한 바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승인조건 그리고 그에 앞서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 의무로 보는 것입니다. 방송법에 따른 법적 의무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권을 받을 때 우리가 부과하는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라는 의미는 바로 100% 준수, 100% 이행하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90 몇 퍼센트 되더라도 성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사업자들은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또 이행이 안 됐을 때 제재하는 기준은 100%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기준을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4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송 진행 상황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5년 7월에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에 대해서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 (주)조선방송은 바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주)채널에이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주)조선방송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즉 콘텐츠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성실히 준수하고’ 부분이 그 정도면 충분히 준수가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4일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채널에이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판결이 예상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콘텐츠 투자에 대한 실적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JTBC 같은 경우는 실적만 보면 투자액은 2,400억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목표치를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행률은 비록 53.9%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1,300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두 방송의 실적은 476억원, 또 600억원에 불과합니다. JTBC가 약 2, 3배 정도 많은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콘텐츠 투자가 많은 방송사와 적은 방송사의 평가가 같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정책이라고 볼 때 방송의 경쟁력도 높여줄 수 있고, 또 시청자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의 질이 그만큼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과징금 부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니까 제재수준이라는 항목에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 콘텐츠 투자금액, 재방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사에 공히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 콘텐츠 투자를 많이 했던 방송이 비록 이행률은 낮지만 투자금액을 고려해서 2, 3배나 많은 투자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가 되어서 이렇게 과징금이 같은 액수가 나왔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TV조선이나 채널A가 JTBC에 비해서 과징금 금액이 낮아야겠지만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2배 이상 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교衡量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일한 과징금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JTBC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어긴 부분이 있는데 재방비율을 어겼습니다. 타 방송은 콘텐츠 투자만 우리가 시정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가 재방비율도 어겼지만 이런 콘텐츠 전체 액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같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각 종편 방송사들이 종합편성이라는 승인조건에 걸맞게 많

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종합편성으로서 충실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종편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성장을 했고,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력이 미치는 과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공적 책임도 당연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오보·막말·편파 방송심의 현황이 작년도에 5페이지 하단에서 나온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작년까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심위의 올해 상반기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며칠 전에 보도가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편프로그램과 관련한 민원이 1,021건으로 접수가 됐는데 1년 전 지난 상반기지요, 550건보다도 1,021건이니까 무려 85.6%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내용이 유형별로 보니까 공정성 위반이 504건으로 49.4%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올해는 심사대상이 아니고 내년에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겠지만 미리 나온 보도를 보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공적 책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겠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위반도 176건이나 됩니다.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출연자의 발언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심위 올해 상반기 민원접수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작년에도 공적 책임과 관련해서 이행추구가 나갔었지요?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나갔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올해도 이행추구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행추구만으로 과연 이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이 지켜질 것인가 심각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이미 이렇게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행추구 외에는 달리 행정지도를 할 방법이 없다면 적어도 우리 종편사들이 좀 더 자각을 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정노력, 그것이 아주 강화되어야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자가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마구 편파적으로 해서 민심을 오도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점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행정노력이 강화되어야겠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방송사들이 출연진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분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 또는 아주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증하고, 또 자율적으로 그것을 걸러내는 방송사의 노력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실적을 우리가 받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확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적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재승인 심사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재승인 심사 시에도 방송심의에 대한 실적 부분이 정량적인 평가 감점요

인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정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승인 심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물론 심사위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방송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물론 방송평가 부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방송의 품질을 높이고 품격 있는 방송을 하도록 우리의 정책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송사들이 시청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청률은 그저 이목을 끌고 검증되지 않는 자극적인 언사를 쓰는 방송프로그램에 더 시청률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혹을 방송들이 철저하게 절제를 하면서 방송의 품격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출연진을 잘 검증하는 장치가 과연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방송사들이, 사업자들이 깨닫고 자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의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오늘 안건은 종편4사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제일 여기에서 중요한 것도,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니까,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오보·막말·편파 방송 문제입니다. 5페이지 하단 <표>를 보면 오보·막말·편파 방송, 오보·막말은 공정성 평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공정성 평가는 각기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보·막말, 이것은 그냥 합의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강력하게 고쳐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지난번 방송규칙 개정에서도 오보·막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정성 평가 부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2배, 1.5배 높이는 것을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표>를 보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완전히 후퇴한, 더 악화된 방송이 4개 종편 중에서 2개입니다. TV조선은 2014년 심의조치가 95건에서 127건으로 정말 대폭 증

가했습니다. 채널A는 2014년 54건에서 2015년 67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JTBC는 16건에서 7건으로, MBN은 18건에서 13건으로 개선됐다고 할까, 낮아졌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심의조치는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로 나누어지는데 TV조선의 경우 2015년 127건의 심의 조치 중에서 법정제재가 21건으로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지도로 별점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행정지도 부분은 별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별점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채널A도 비슷합니다. 67건 중에서 역시 법정제재는 20%도 안 됩니다. 다 행정지도로 그냥 넘겼습니다. 실제 내용이 이렇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방송프로그램의 3대 장르 보도·교양·오락 장르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장르별 구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확인을 못해 봤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보도 분야입니다. 보도 분야가 확실합니다. 여기 시정명령과 이번 처분에서 보도편성 비율을 낮추라는 재승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은 보도편성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도비율 부분은 애초부터 재승인 조건이 아니고 권고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행촉구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도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토론이 됐었는데 보도 편성비율이 실제로 낮아진 것이냐, 아니면 보도 분야에 들어 있어야 할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대폭 옮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뉴스 말고도 뉴스가 있으면 뉴스해설, 논평, 심층분석, 뉴스의 뒷얘기 이런 것은 보도 분야입니다. 시간차도 그날 뉴스에 대해서 그날 뉴스 심층분석을 하면서 이것은 스트레이트뉴스가 아니다 하고 보도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실사·검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분야 편성비율이 수치로만 낮아진 것이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적어진 것은 아니다,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도 종편인데 종합편성 조화로운 편성이 아니라 보도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편성비율이 과도한 보도 분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제일 많이 터지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심의조치를 제일 많이 받은 방송사의 순서로 보도편성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도편성비율을 보면 제일 높은 방송사 순서로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직접 상관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보도편성비율 규제를 매우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콘텐츠 투자, 이따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연관해서 콘텐츠 투자액의 규모가 작은 방송사 순서로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상관성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회과학적인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권장해야 하고 자기들이 낸 사업계획서도 안 지키면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상관성이 매우 강한 보도편성 비율과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규제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 부분을 보니까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저는 작년, 제작년 처음부터 콘텐츠 투자 목표액에 관해서..., 각 방송사업자들이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우리는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권장해야 할 입장입니다. 왜? 품질이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너무 허무맹랑하게 콘텐츠 투자목표액을 높여서 재승인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는 데 얼마나 큰 뒷받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로서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목표액이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액 중 이행비율이 다른 사보다 낮다, 그러나 이행액은 투자액, 절대액은 다른 사보다 2배, 3배 높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행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 투자를 제대로 안 했다고 제재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콘텐츠 투자액과 이행비율을 함께 반영하는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가 세운 목표를 얼마나 잘 이행했느냐는 이행율만으로 채점할 것이 아니라 절대액수도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그러면 그 방송사는 보도편성비율이 제일 낮았습

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책목표대로 간 것입니다. 정책 취지대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장려하고 권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내세운 목표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행비율만 가지고 따지고 제재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방송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JTBC 투자목표액이 조선방송보다는 3배, 채널A보다는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JTBC의 보도편성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2014년, 2015년 23~24%입니다. 23~24%이면 우리가 권장하는 수준 25%, 27%보다 훨씬 낮아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이 보도 편성비율 40% 안팎을 넘나들 때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보도편성비율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 상관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보·막말 방송은 보도·교양·오락 중에서 보도 분야에서 주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고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라도 보도 편성비율 낮추기와 콘텐츠 투자액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펴 나가고, 방송사들이 그렇게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 평가제도가 콘텐츠 투자비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실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순히 이행률만 본 것이 아니라 이행금액을 반영해서 과징금 금액을 산정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번에 행정처분할 때 그것을 일종의 정상 참작처럼 해서 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처음부터 심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것을 제대로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두 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추가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2014년 방통위가 종편4사를 대상으로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그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1심은 방통위가 패소한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만 2심과 3심에서 승소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때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제가 2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길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들을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일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승인조건을 원고, 즉 종편사업자들의 주장과 같이 가벼운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업자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할 의도가 없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이후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승인 유효기간 내에는 피고, 즉 방통위가 그러한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계획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방송발전과 공공복리 등의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위원회가 부과한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이것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한 “콘텐츠 투자계획은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는 종편PP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대한 항목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할 때도 말씀드렸습지만 우리가 최초 종편을 승인해 줄 당시에 그 정책목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정책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해서 감독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종편들의 투자계획을 보면 특정사를 빼면 2014년 1차 재승인 심사 당시에 투자계획을 최초 사업승인 대비 최대 2분의 1, 그리고 최소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 준 규모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앞서 김재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보도·시사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재승인 심사는 당초 종편PP 도입 정책 목표, 도입 취지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기타 사항으로 분류한 것은 이것은 재승인 조건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그런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재승인 조건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승인 조건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재승인 조건에서 자기들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되는 바와 같이 과연 그러한 자기들의 조치내용이 실질적으로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방지하고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가적인 이행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결코 이것이 기타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편이 올해로 출범 6년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타사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게 많이 하고 있는 JTBC를 제외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3사는 BEP(Break Even Point,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 지금 BEP에 거의 근접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방송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공정한 방송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정성 시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막말, 선정적인 방송 그리고 오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은 종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종편의 정상화,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막말·편파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행자나 패널들을 지속적으로 방송에 출연시키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막말, 편파 방송으로 심의제재를 받은 진행자나 패널에 대해서는 종편이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 자체적으로 낸 계획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편에서는 자체적으로 외부 출연자에 대한 심의, 제재기준을 가지고 있고 TV조선 같은 경우를 보면 1년에 법정제재를 2회 받은 출연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나 출연정지, 출연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진행자에 대해서 내부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작년 같은 경우에 TV조선은 없었고, 채널A와 MBN 같은 경우에는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종편사나 진행자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밝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진행자가 최근에 출연자에 대해서 “성매매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8월 4일 날 방송분에 나타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자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전에 타 종편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종편에 오기 전에 타 종편에서 막말·편파 방송으로 해서 15차례 이상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영입해서 시사 라이브쇼 진행을 맡겼습니다. 이분이 진행을 맡자마자 지난 한 달 동안 무수히 많은 편파·선정·막말방송에 가까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타 종편에서 막말·편파 방송을 해서 하차한 진행자를 다른 종편이 또 기용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진행자나 패널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 위원회에서 기용해라,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당 종편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제출한 계획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제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 계획을 내용적으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이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서 방송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가적으로 이행촉구를 하고 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지금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특정 종편에 대해서는 이러한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철저한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간단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종편 관련된 안건이 이번이 세 번째 같습니다. 이번에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이 직전에는 재승인 세부계획 그리고 그전에 또 뭐가 하나 있었지요? 방송평가 할 때 또...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종편과 관련된 안건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거의 유사한 우려점이나 문제점이나 이슈가 계속 지적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편이 출범한 이후 매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략 5년 정도 됐다고 치고, 지난 5년 동안 오늘 자료에도 보면 콘텐츠 투자실적이라든가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승인조건이나 권고사항 내용에 보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등등 방통위가 그간에 승인조건이라든지 권고사항을 통해서 매체별로 유의해서 이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쭉 있더라고요.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질적·양적으로 한 번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우리 위원회 내에서 과거 5년 동안에 방통위가 각종 행정절차,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종편들에게 제시했던 사항들과 관련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실적, 현황을 쭉 분석해서 앞으로 방통위는 종편에 대해서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내부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평가 내용을 논의할 때도 그렇고, 또 재승인 심사 세부기준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또 시정명령에 관련해서 조치할 사항을 이야기할 때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오는 이야기들이 방통위가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계기가 있을 때마다 조치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로 봤을 때 지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닌 다음에는 그것을 구체화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하는 실천적인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면 어떤 액션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사무처와 위원님들 간에 논의, 토론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끝으로 방송정책과 관련해서 또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방송정책 규제와 관련해서 법제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요.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업무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 보니까, ‘업무정지 처분은 시청자 불편이 우려되므로 과징금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방송정책, 방송에 대한 우리의 규제업무, 크게 2가지이지요. 진입규제라는 것이 있고, 사후 행위규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것처럼 작년에도 시정촉구 공문도 보냈고, 또 시행계획서 제출요구하라는 안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데도 오보·막말·편파 방송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보도편성비율을 낮춰 달라고 계속 재승인 심사에서도 조건부 부과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투자도 지금 여기에 나온 것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티타임에서도 논의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고쳐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정말 하기 어려운 고언을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은 끊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이내 업무정지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진입규제를 잘못해서인지, 하여튼 방송사들이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책 규제 그리고 촉구 공문을 보내도 이것이 잘 먹히지 않으면 사후 행위규제로서는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후 행위규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재승인 심사인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있을 종편4사와 보도전문PP 2개사 6개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인 것 같은데 그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도 허가 거부는 현실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후의 보루는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말 지금부터 내년 1월에 있을 종편4사, 보도채널 2사 6개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금부터라도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잘 지켜보고 그때 심사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지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개선요구를 하고 지적하고 또 시청자들이 못 견뎌하고 지켜워하고 그런 민원들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업무정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3개월 이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정비해서 방송사업을 새롭게 시작해라’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못하는데, 왜 못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10여년 전에 지상파 방송사도 재허가 거부에 준하는 결정이 있었습니
다, 2004년 말, 2005년도에도 방송위원회와 국회에서... 이것은 국민 여론과 시청자들과 또
방송정책의 기구인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너무한다, 거꾸로 가고 있다, 아무리 지적하고 시
정요구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 써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해야 할지 검토해야 할지, 하여튼 그것도 마지막 수단이겠지만 고민
스러운 일이지만 검토할 단계가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 그것
을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 할 수 없지', 놔두면 그것을 악용하는 방송사업자가 있지 않겠
습니까? '우리는 이것 할 수 있어' 하고 규제기구가 적극 대처해도 개선이 될지 안 될지 모
르는데 그것을 잘 연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그 취지에 동
감합니다. 특히 이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토론회를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면서 저
도 여기에 꼭 토론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적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담보해낼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영업정지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지적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어서 이행촉구가 올해도 또 나가는데 내년엔 이것이 우리가 다시 평가할 때 지켜지리라
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저 사업자가 돈이 드는 일이고 많은 제작비가 투입이
되어야 그런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재하는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런 치열하게 서로 고민해 보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안건을 검토하면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종편이 6년차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줄어들지 않을까?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서, 즉 콘텐츠 산업에 기여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아주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의 정책목표, 종편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보·막말·편파 방송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종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을까? 결국 이것이 시청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렇게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일삼는 진행자나 패널을 출연시키지 않으면 과연 종편이 운영이 안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상파들은 이런 진행자나 패널 없이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거든요. 또 역으로 봐서 과연 이런 진행자나 패널들이 지금 문제되는 이러한 막말·편파 방송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지상파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점검하는 계기가 있어서 종편들이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심하고 이것이 개선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종편 내부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꽤심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종편들이, 그리고 종편들의 대주주들이 다 우리나라 언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 종편은 이렇게 운영될까? 과연 그것이 종편사들의 대주주나 경영진의 문제인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심위처럼 규제하고 또 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기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그러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우리가 제재하고 이것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현실에 반영해서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계기가 내년 재승인 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편 정책에 대한 평가, 종편들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정책에 다시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아지는 의견이 종편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서 이제는 시청률도 많이 올라갔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반해서 내용면에 있어서 과연 실질적인 평가를 했을 때 품격이라든지 수준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에 따라서 종편들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지금 법적으로 시정명령 또 행정지도적인 성격으로 이행촉구 등을 해 오고 있는데, 그에 관한 개선이 지금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과연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한 번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년 초에 있을 재승인 심사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초반에 지적이 있었습시다만 단순히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콘텐츠 투자금액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1개 더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상 과징금 기준금액이 3,000만원이고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사 모두에 대해서 50% 가중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주신 말씀들은 종편의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6-46-17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대상법인은 (주)매일방송입니다. 시정명령(안)은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및 ‘15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16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16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할 것’과 ‘15년 재방비율 미준수와 같은 사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6년 재방비율을 반드시 준수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4년 11월 18일 (주)매일

방송에 대해 재승인 의결 및 재승인조건을 부과하고, '15년 2월에서 6월까지 2014년도 실적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6월 8일 (주)매일방송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행촉구한 내용은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 12월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15년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년 2월부터 6월까지 2015년도 이행실적 점검이 있었고, 7월 20일 (주)매일방송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있었습니다.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은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 및 2015년 콘텐츠 투자계획 및 2015년 재방비율 미이행입니다. 콘텐츠 투자계획의 경우 2015년에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 1억 7,800만원과 20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 632억 9,600만원을 합하여 총 634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499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100%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방비율은 2015년 재방비율 계획이 49.5%인데 실제로는 52%로 미이행하였습니다. 피심인의 주요 의견입니다. 재승인조건의 '성실한' 이행은 반드시 100%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방송광고시장 등 경영여건과 매출액,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하여 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출범 이후 누적된 대규모 적자와 2015년에도 지속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499억여원의 콘텐츠 투자를 집행하였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2014년, 2015년 미이행 금액과 2016년 계획 금액을 2016년 내에 모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송제작의 특성상 프로그램 기획에서 방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어 5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투자금을 모두 집행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종편PP 재승인조건에 따른 2015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피심인이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승인조건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서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8월 중으로 시정명령을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에 다른 종편3사에 대해서 했던 것과 지금 같은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MBN에 대해서는 재승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나가는 것이고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피심인의 의견 중에 2015년 미이행 금액을 2016년 내에 모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시간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판단 대상이 1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촉구를 하였고, 다른 종편3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콘텐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즉 시정명령을 어떻게 받을 것이라든가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춰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세워 왔다면 저희가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더라도 그 시정명령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의견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는데 장애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종편에도 과징금이 부과 됐고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마찬가지로 형평성의 논리에 따라서도 당연히 이런 이행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시정명령이 나가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피심인의 의견 중에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중에 도저히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적 약속입니다. 그런 공적 약속을 다만 시기상으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여러 번 사업자에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문서가 가기에는 결정이 따르고 심의가 있어야 하는 공식 절차가 시간이 걸리지만 구두로라도 사업자에게 계속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했고 충분히 사전에 MBN 측에서 저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못 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피심인 의견에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그런 지도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번 건은 MBN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2014년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시 권고사항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이것이 두 번째에 있고, 세 번째로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조달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건 본문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재승인 조건 미이행에 대한 점검이라서 권고사항에 대한 점검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권고사항 실적에 대해서 점검하지는 않았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아서 나름대로 공익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소수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나름대로 공익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다른 종편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편성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예능 프로그램에 일정 정도 공익성을 가미합니다. 소수자 계층이라든가 특정 계층에 대해서 한다거나 특정 주제를 다룬다거나,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예능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방송사에서는 ‘이것은 공익적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이나 사업계획서에 했던 계획들을 이행했다고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순수 공익적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광고도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분류되듯이 사업자도 계획서에 냈고 우리도 재승인조건이나 권고사항으로 내는 이런 공익적 프로그램은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 공익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편성됐느냐는 것입니다. 타 종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점검이 안 됐다면 실질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공익성이 가미된 것과 별개로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계획은 어느 정도 이행이 했는지 한 번 점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 취지 아시겠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주)매일방송이 이 권고사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어차피 재승인 심사 때도 필요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재승인 심사 기간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중간에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8월 25일 목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0분 폐회 】